2025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개정 공지

윤준필 관세사

- FTA특례법(2024.12.31), 시행령(2024.12.30), 시행규칙(2024.12.30) 각 일자별로 개정됨.
- 관세사 시험은 시험일 당일 시행 중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용됨.
- 1차 시험의 경우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반영됨.

1. 교재 p9 → (19) 필리핀(시행규칙 제2조)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18) 캄보디아	(18) 캄보디아 **(19) 필리핀**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필리핀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다)**

2. 교재 p15 → (2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적용하는 물품 및 세율(시행령 제2조 제23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2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적용하는 물품 및 세율	(2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적용하는 물품 및 세율 **(2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물품 및 세율** **시행령 별표 17의8**

3. 교재 p22 → 6. (3) 경정 또는 추징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법 제9조 제2항)

• 사후적용 신청 대상 및 기간의 세분화

개정 전	개정 후
수입자(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경정) 또는 제39조제2항(추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자(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경정) 또는 제39조제2항(추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4. 교재 p29 → 6. (1) 기관발급(시행규칙 제7조)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⑪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⑪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⑫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5. 교재 p31 → 6. (2) ⑯, ⑰ 신설(시행규칙 제7조)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및 호주, 일본, 뉴질랜드 RCEP 내 자율증명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⑮ 캄보디아와의 협정	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⑮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6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⑯ 캄보디아와의 협정 …(중략)… **⑰ 필리핀과의 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6. 교재 p34 → (12) 필리핀(시행규칙 제8조)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11) 캄보디아	(11) 캄보디아 **(12) 필리핀**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②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7. 교재 p37 → (12) 대체발급(시행규칙 제10조)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이를 대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이를 대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8. 교재 p42 → (19)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2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시행규칙 제15조)

• RCEP 자율발급 주체 추가 및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2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생략) ② 제7조제2항제15호에 제15호의2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2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2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①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1서식** **② 제7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가. 별지 제24호의12서식** **나. 별표 20의5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9. 교재 p55 → √ 심화 (시행규칙 제25조)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시행규칙 제25조)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시행규칙 제25조)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및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0. 교재 p58 → 2. (1) 회신기간(시행령 제13조 제1항)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⑮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⑮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⑯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11. 교재 p64 → (22)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시행규칙 제24조)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2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2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22)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①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②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2. 교재 p68 → 3. (2) 점진적 완화조치 적용국가(시행령 제27조)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상기 점진적 완화 조치의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상기 점진적 완화 조치의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말한다.**

13. 교재 p71 → 5. (2) 특정 체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시행령 제25조)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14. 교재 p73 → 5. (1) 잠정조치 특례 적용국가(시행령 제29조 제1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5. 교재 p74 → 2. (1)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시행령 제30조 제1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⑧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⑧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⑨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16. 교재 p79 → (13) 필리핀(시행령 제32조 제14항 신설)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12) 캄보디아	(12) 캄보디아 **(13) 필리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17. 교재 p82 → (22) 필리핀(시행령 제21조 제1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21) 캄보디아	(21) 캄보디아 **(22) 필리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해야 한다.**

18. 교재 p82 → 2. (1) 필리핀(시행령 제22조 제1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9. 교재 p86 → 3. (1) 협정별 조치적용 과도기간(시행령 제23조 제1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⑱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⑱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⑲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 교재 p87 → (2)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시행령 제23조 제2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⑳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⑳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㉑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1. 교재 p88 → (3) 긴급관세조치 총기간(시행령 제23조 제3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⑳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⑳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㉑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2. 교재 p88 → (4) ① (시행령 제23조 제4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① 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① 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23. 교재 p89 → 4. (1)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협정(시행령 제24조 제1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⑮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⑮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⑯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4. 교재 p90 → 2. (1) 통보기한(시행령 제33조 제1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③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시아: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③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25. 교재 p91 → (2) 협의기회 제공기한(시행령 제33조 제2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③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③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④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26. 교재 p91 → 3. (4)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시행령 제33조 제6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27. 교재 p92 → (5)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등(시행령 제33조 제7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및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8. 교재 p92 → (9)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등(시행령 제33조 제11항)

• 한-캄보디아 및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터키와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영국과의 협정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터키와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영국과의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캄보디아와의 협정 또는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 교재 p94 → 2. (2) 협의기간(시행령 제34조 제2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30. 교재 p94 → 3. (3)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등(시행령 제34조 제7항)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1. 교재 p95 → 3. (4)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캄보디아 등(시행령 제34조 제8항)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① 미합중국	① 미합중국
② 콜롬비아	**② 콜롬비아 및 필리핀**
③ 캐나다 및 캄보디아	③ 캐나다 및 캄보디아
④ 중미 공화국들	④ 중미 공화국들

32. 교재 p98~99 → 2. (1) 재수출물품(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table>
<tr><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
<tr><td>상기 1.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으로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 중 ⑥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 중 ①부터 ④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 중 ①부터 ⑤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td><td>상기 1.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으로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이스라엘、중미 공화국들 및 <u>필리핀과의 협정</u>,「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 중 ⑥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 중 ①부터 ④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u>필리핀과의 협정</u> 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 중 ①부터 ⑤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td></tr>
<tr><td>- 협정별 재수입시 관세면제 물품 -
<table><tr><th>적용협정</th><th>대상물품</th><th>비고</th></tr><tr><td></td><td></td><td rowspan="4">면제요건 충족 必 (단, ⑥은 제외)</td></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RCEP 및 캄보디아</td><td>①②③④⑤</td></tr></table></td><td>- 협정별 재수입시 관세면제 물품 -
<table><tr><th>적용협정</th><th>대상물품</th><th>비고</th></tr><tr><td></td><td></td><td rowspan="4">면제요건 충족 必 (단, ⑥은 제외)</td></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RCEP, 캄보디아 및 필리핀</td><td>①②③④⑤</td></tr></table></td></tr>
</table>

33. 교재 p100 → (3) 담보제공(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⑪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상기 (1)의 ①부터 ⑤까지의 물품	⑪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상기 (1)의 ①부터 ⑤까지의 물품 **<u>⑫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상기 (1)의 ①부터 ⑤까지의 물품</u>**

34. 교재 p102 → 1.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법 제31조 제1항)

• 협정에 관계없이 민원인의 의문 해소를 위한 국내제도라는 점에서 단서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교재 p105 → 1. 사전심사서 내용변경(법 제32조 제1항)

• 협정 외에도 사전심사 근거나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화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을 위해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6. 교재 p116 → 2. (1) 회신기간(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한-필리핀 FTA 발효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⑱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필리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37. 교재 p119 → 1. 가산세(법 제38조 제1항)

• 관세법 개정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상향 반영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1) 일반적인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고의적인 경우(부정한 행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고의적인 경우(부정한 행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상)